

제2022-32호 2022년 3월 11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92호 여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1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716호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 여수시 조례 제171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8
- 여수시 조례 제1718호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35
- 여수시 조례 제1719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여수시 조례 제1720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여수시 조례 제1721호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여수시 조례 제1722호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여수시 조례 제1723호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여수시 조례 제1724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여수시 조례 제1725호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여수시 조례 제1726호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여수시 조례 제1727호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1
- 여수시 조례 제1728호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 여수시 조례 제1729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 여수시 조례 제1730호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회 람								
--------	--	--	--	--	--	--	--	--

여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0.

여 수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거환경개선 정비
 - 1)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2) 명 칭 : 고소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 27개 구역 - “별첨 1”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별첨 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2)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4. 준공인가 내역 : “별첨”

5. 기타 대상지역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659-4559, 담당자 김대성)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현황

구분	종 류	명 칭	위 치	준공인가 내역	비 고
합 계 (27개소)					
1	주거환경개선	고소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고소동 65번지 일원	준공 '99.12.22	
2	“	수정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수정동 457번지 일원	준공 '05. 5. 6	
3	“	수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수정동 160-5번지 일원	준공 '06. 3.30	
4	“	수정3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수정동 168-1번지 일원	준공 '14. 3.24	
5	“	군자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군자동 123번지 일원	준공 '02.10.10	
6	“	군자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군자동 216번지 일원	준공 '05. 1.31	
7	“	봉산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산동 555-1번지 일원	준공 '99. 3. 7	
8	“	봉산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산동 417번지 일원	준공 '06. 6.29	
9	“	봉산3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산동 167번지 일원	준공 '05. 7. 1	
10	“	봉산4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산동 791-1번지 일원	준공 '06.12. 5	
11	“	봉강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강동 129-1번지 일원	준공 '96. 8.24	
12	“	봉강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봉강동 513-2번지 일원	준공 '06. 2.16	
13	“	덕충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덕충동 262번지 일원	준공 '98. 3. 9	
14	“	덕충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덕충동 69번지 일원	준공 '05.12.27	
15	“	동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동산동 1834번지 일원	준공 '06. 7.21	
16	“	연등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연등동 382-1번지 일원	준공 '04. 6.24	
17	“	광무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광무동 38번지 일원	준공 '03. 8.27	
18	“	광무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광무동 815번지 일원	준공 '11.12.13	
19	“	광무3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광무동 301-1번지 일원	준공 '12. 1.30	
20	“	충무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충무동 65번지 일원	준공 '04. 2.16	
21	“	종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종화동 82번지 일원	준공 '02. 9.17	
22	“	남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남산동 1044번지 일원	준공 '05. 4. 6	
23	“	서교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서교동 905번지 일원	준공 '11.12.27	
24	“	국동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국동 1063-75번지 일원	준공 '04. 7. 2	
25	“	국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국동 505번지 일원	준공 '10. 1.11	
26	“	국동3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국동 679-1번지 일원	준공 '10. 2. 5	
27	“	국동4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여주시 국동 874-14번지 일원	준공 '13. 8.17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익홍



여수시 조례 제1716호

붙임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

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하고,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717호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1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
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
법」 제10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3조(「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
항”으로 한다.

제4조(「여수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5조(「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6조(「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7조(「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8조(「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제9조(「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156조”로 한다.

제13조(「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14조(「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17조(「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9조(「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0조(「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민회관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2조(「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3조(「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4조(「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5조(「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한다.

제30조(「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에 규정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법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p>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2.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p>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4조(예우) ① -----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4.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임사항) ①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p>	<p>제2조(위임사항) <삭제></p>

<p>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	-------------------

5.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 ----- ----- -----.</p>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p>	<p>제1조(목적) ----- -- 제123조부터 제134조----- ----- ----- ----- ----- ----- ----- ----- -----.</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p>

<p>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지역 이외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② ~ ⑦ (생략)</p> <p>제2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중부민원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126조-----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8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7.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p>	<p>제5조(적용범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130조-----</p>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8.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 제182조----- ----- ----- -----.

9.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 -----.

10.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p>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p>
--	-----------------------------------

11.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 -----.</p>
<p>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p> <p>2.·3. (생략)</p>	<p>제3조(획정기준) ----- -----.</p> <p>1. -----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p> <p>2.·3. (현행과 같음)</p>

12.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p>	<p>제1조(목적) ----- 「지방자</p>

<p>「<u>치법</u>」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치법</u>」 제156조 ----- ----- ----- -----.</p>
--	---

13.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 제출 사항</p> <p>4. ~ 8.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위원회 기능)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지방자치법」 제148조-----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14.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p>	<p><삭제></p>

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15.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 ----- -----.</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생략)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 -----. ③ -----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p>

<p><u>칙심의회</u>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16.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42조----- ----- ----- ----- -----.</p>

17.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p>

18.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p>	<p>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u>제154조</u>-----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19.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p>

20.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여수시투자</p>	<p>제20조(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159조----- ----- -----</p>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
-------------------------------	--------------

21.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 ----- -----.

22.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 「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23.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p>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여수시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1. ----- 「지방자치법」 제16조----- -----.</p> <p>2. ~ 5. (현행과 같음)</p>
---	--

24.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제14조(기금의 설치)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p>

25.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p>	<p>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여수시의회 제출 전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
--	---

26.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 -----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 ----- ----- .

27.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근거해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 -----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 ----- .

28.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u>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47조제3항----- ----- ----- -----.</p>

29.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지방자치법</u>」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 5. (생략) 	<p>제2조(적용 범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지방자치법</u>」 제70조----- ----- ----- ----- 3. ~ 5. (현행과 같음)

30.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 ----- -----.

31.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 -----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
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
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
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한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
9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
의 사무와 법제41조제3항에 규
정된 국가위임사무와 전라남도
(이하 “도” 라 한다)위임사무
중 국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직접 감
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
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증인으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또
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
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 법 제13조
에 따른 -----
법 제49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과태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

3. (생략)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수시여비조례의 국내여비지급규정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

-----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

-----.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

-----.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 의하여 의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또는 도의 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피감사공무원선서서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선 서</p> <p style="margin: 10px 0;">본인은 여수시의회 ○○ ○○위원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여수시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 다.</p> <p style="margin: 10px 0;">년 월 일</p> <p style="margin: 10px 0;">기 관 명 : 선 서 인 : (인)</p>

-----.

제13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

-----.

[별표1]

<p style="margin: 0;">-----</p> <p style="margin: 0;">----- 「지방자치 법」 제49조----- ----- ----- ----- ----- ----- ----- ----- ----- -----</p> <p style="margin: 10px 0;">년 월 일</p> <p style="margin: 10px 0;">----- -----: -----</p>
--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u>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u> 4. (생략) 	<p>제1조(목적) ----- ----- <u>제51조에 따라</u> ----- ----- ----- -----.</p> <p>제2조(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u>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18호

붙임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작업복 수거·세탁·건조·배송 등 원스톱 세탁 서비스
2. 작업복 수선
3.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제3조(이용대상) ①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여수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여수시 소재의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료 감경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4조

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하여 이를 세탁소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탁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가 격	비 고
기 본	500원	1벌당(상·하의 포함)
동 복	1,000원	1벌당(상·하의 포함)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719호

붙임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1호 중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영개선자금”으로 하고 제2호 중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규모시설개선자금”으로 하고, 제3호 중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영컨설팅비용”으로 하고, 제4호 중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 비용”으로 하고, 제5호 중 “우수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참여비용”으로 하고,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사용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u>」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p> <p>② -----</p> <p>③ -----</p> <p>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신 설></p> <p>④ <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u>소상공인 기본법</u>」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p> <p>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p> <p>② -----</p> <p>③ -----</p> <p>1. 경영개선자금</p> <p>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p> <p>3. 경영컨설팅 비용</p> <p>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 비용</p> <p>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참여비용</p> <p>6. <u>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u></p> <p>④ <u>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사용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u></p>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0호

붙임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만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만8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 신 설 ></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만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p>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1호

붙임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월 1매씩 지급한다”를 “월 2매씩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사용한 목욕권”을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매분기 다음 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해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No.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담당확인필</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담당확인필	
담당확인필			
<h2 style="margin: 0;">20 년도 노인 목욕권</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10px;"> 여 수 시 </div>			
<p>사용기간 : 20 . 1. 1. ~ 20 . 12. 20.까지</p>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유 의 사 항		
<p>◆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 양도 및 매매가 금지됩니다.</p>		
<p>• 사용업소 :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권 협약업소</p>		
사 용 일	협약업소명	어르신 주소지 (해당 면 체크)
20 . . .		남면, 화정면, 삼산면
<p>※ 목욕업장 이용 시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u>월 1매씩</u>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기준) ----- ----- ----- -----<u>월 2매씩</u>----- ----- -----.</p>
<p>제9조(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u>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u> 등을 첨부하여 <u>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u>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p>	<p>제9조(요금 정산) ----- ----- ----- -----<u>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u>----- -----<u>다음</u>----- -----.</p>
<p>제11조(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u>하여 관리해야 한다.</p>	<p>제11조(대장 관리) ----- -----<u>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u>과 <u>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u>-----.</p>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722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제6조(이용료 징수) ① 시설의 장
은 이용자 1명당 1일 소요되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
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
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이용료 징수) ① 시설의 장
은 이용자 1명당 1일 소요되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인



여수시 조례 제1723호

붙임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중목욕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장”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중 “공중목욕장”을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노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노인”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이장”을 “이장 및 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공중목욕장”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u></p>

제2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이하 “공중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대상)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중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시민은 노인의 사용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고,

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
-----.

제4조(사용대상) -----

----. ---- 노인-----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읍·면장(제2조 단서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관내 이장 대표
3. ~ 5. (생략)

⑤ (생략)

따라 동지역 중 섬 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

④ -----

-.

1. (현행과 같음)
2. --- 이장 및 마을 -----

3.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4호

붙임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4.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신설)</p>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 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4.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운영비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p>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p> <p>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 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릅



여수시 조례 제1725호

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요트시설의 운영관리)”를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
3.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
4.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성과평가 등)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를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30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p> <p>② (생략)</p> <p>제12조(요트시설의 운영관리)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해사안전법」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p> <p>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p>
	<p>-----</p>

<p>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u>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u> 2. <u>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u> 3. <u>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u> 4. <u>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u> 5. <u>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u> 6. <u>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제14조(위탁운영)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 -----.</p>
<p>②·③ (생략)</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p> <p>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청문)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 ③ (생략)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18조의2(성과평가 등)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청문)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28조(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용)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6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하목, 같은 조 제2호거목 및 같은 조 제3호차목 중 “시설”을 각각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자연경관지구</p> <p>가. ~ 파. (생략)</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거. (생략)</p> <p>2. 특화경관지구</p> <p>가. ~ 하. (생략)</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너. (생략)</p> <p>3. 시가지경관지구</p> <p>가. ~ 자. (생략)</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목에서 이동 2019. 5. 13.]</p> <p>카. ~ 파. (생략)</p>	<p>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 ----- ----- -----.</p> <p>1. -----</p> <p>가. ~ 파. (현행과 같음)</p> <p>하. ----- ----- <u>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u></p> <p>거.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 ----- <u>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u></p> <p>너. (현행과 같음)</p> <p>3. -----</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 ----- <u>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u>-----</p> <p>카. ~ 파. (현행과 같음)</p>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7호

붙임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단장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단원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이나 단체(단체에서 단원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방재단은 대표와 단원으로 구성하며,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의 방재단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면·동의 방재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읍·면·동 방재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해당 읍·면·동의 주민 중에서 방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방재단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회계 처리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및 활동)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 ④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총괄표와 단원의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단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해야 하며,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소집 등) ① 단장 또는 시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라 단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0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정한 경우에는 여수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재난 대비 방재단 각종 활동 내용
2. 방재단 활동을 위한 시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 사항

3. 그 밖에 방재단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단장으로 임명된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 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방재단 또는 단원에게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여비 등을 말하며, 여비의 지급 기준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단장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 ③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

제15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6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7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격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 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자격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체명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_____)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_____)	부서명	
인원	총 _____명 / 남 _____명, 여 _____명		
보유장비	장비명(규격) _____대 / 장비명(규격) _____대 장비명(규격) _____대 / 장비명(규격) _____대		
지원 가능 인원 및 장비	인원	남 _____명, 여 _____명	
	장비	장비명(규격) _____대 / 장비명(규격) _____대 / 장비명(규격) _____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 지원 등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가입 희망 회원 명부(별지 서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계획서(년도)

월별	주요 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활동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확인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장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참고사항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됨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동상황		비 고
		횟수	시 간	
1				
2				
3				
⋮				

※ 작성방법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에 회원명부 연번을 붙여 기재합니다. [(예)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성 명 : ○ ○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여수시장 (인)

↑
7.7cm
↓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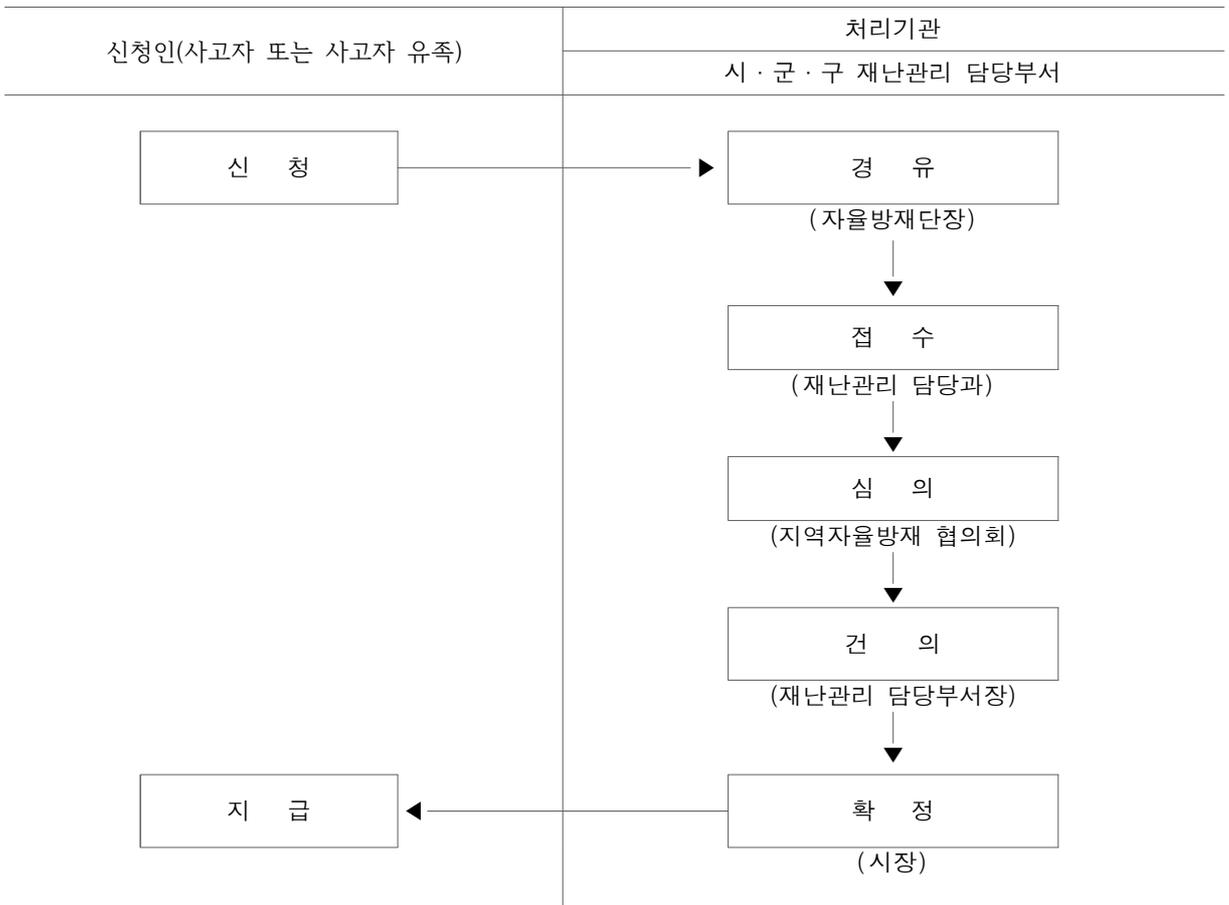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8호

붙임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분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9명”을 “10명”으로,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2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학교수”를 “대학교수 2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2조 및 제5조 관련)

1. 지원한도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	공동주택 분담률 (%)	비 고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90 (95)	10 (5)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팔호 안의 분담률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90 (95)	10 (5)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90 (95)	10 (5)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90 (95)	10 (5)	

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사업<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	공동주택 분담률 (%)	비 고
1. 단지 내 도로 보수	90 (95)	10 (5)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팔호 안의 분담률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90 (95)	10 (5)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90 (95)	10 (5)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90 (95)	10 (5)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90 (95)	10 (5)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90 (95)	10 (5)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증강	90 (95)	10 (5)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0 (95)	10 (5)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 ·개선	90 (95)	10 (5)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 (95)	10 (5)	

다.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 원 사 업	시 분 담 률 (%)	공 동 주 택 분 담 률 (%)	비 고
1.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90 (95)	10 (5)	- 괄호 안의 분담률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다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아.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 제출한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생략)

<신설>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생략)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2·4호에 해당하는 위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

 -----.

제5조(사업비의 부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부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0명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 ③ -----

 -----.

<단서 삭제>

원은 각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관련 분야 공무원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토목·조경·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신 설>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1. ----- 의원 2명 이내

2. ----- 공무원 2명 이내

3. -----
----- 사람 2명 이내

4. -----
-- 대학교수 2명 이내

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이내

⑤ ~ ⑧ (현행과 같음)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729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상수도의 과다 사용, 누수 또는 요금 미납 등에 따라 납기일까지 상수도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요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사람 또는”을 “사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감면 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 용 가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업 종	
	주 소			가 구 수	
	성 명			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	사 유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가구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 해지 증명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④ (생략) <신 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수도의 과다 사용, 누수 또

는 요금 미납 등에 따라 납기일
까지 상수도요금 전액 납부가 곤
란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
게 요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
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
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
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
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
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4.·5. (생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
하여 감면할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 3.-----

----- 사람,

----- 장애인 및 여수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
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현행과 같음)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여수시 조례 제1730호

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특별휴가)</p> <p>① ~ ⑧ (생략)</p> <p><u><신설></u></p>	<p>제14조(특별휴가)</p> <p>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